



일본의 공해분쟁

- 암마가타(山形)현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중지 조정신청사건 -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중지 조정신청사건

(분쟁처리경과)

(사건의 표시) 암마가타(山形)현 99년(조) 제1호 사건
 (절차의 종류) 조정
 (신청 접수일) 99.3.5
 (종결일자·내용) 00.6.13 조정성립, 일부 조정중단
 (신청인) 암마가타(山形)현 A 외 275명
 (피신청인) 암마가타(山形)현 B회사 대표

(분쟁의 개요)

- 피해발생지역 : 피신청인이 건설중인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주변지구 및 하류 C하천 유역 주변지구
- 청구사항 : 피신청인은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의 건설을 중지할 것
- 신청의 이유 : 피신청인이 건설중인 관리형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의 가동에 따라 배출되는 처리수가 C하천에 유입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이를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류지역의 주민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처분장의 차수시트가 파손되는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변주민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99.3.29 : 제1회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장을互選
- 제1회 조정위원회의 시간과 장소 결정
- 유사시설의 견학실시 결정
- 매스컴에 대한 대응방침 결정

99.4.30 :

- 오전 : 조정위원 및 사무국 직원이 유사시설 견학
- 오후 : 제1회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이 신청인들에게 산업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청취 및 피신청인측의 주장 청취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8개 항목에 대한 해명을 요청, 피신청인은 서면회답을 약속
 - 신청인은 조정절차 중에 공사중단과 현지조사 실시 요청, 피신청인은 거절

99.7.16 : 제2회 조정회의

- 신청인의 해명요청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 교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현지조사 실시에 대하여 합의

99.7.22 : 현지조사

- 신청인과 동행한 D대학 조교수가活斷層이 있을 가능성



이 높다는 의견 표명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현지조사실시에 대하여 합의

99.8.30 : 제3회 조정회의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D대학교수 의견에 반론서 교부
- 신청인이 지질조사 실시를 제안,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다음 조정회의에서 D대학교수의 설명을 청취하는 것에 동의

99.11.11 :

○ 오전 : 제2회 조정위원회

- 앞으로 조정진행 방향에 대하여 협의 : 신청인측에게 조건투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전환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조건제시 요청 의사를 결정

○ 오후 : 제4회 조정회의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석해서 D 대학교수의 설명을 청취
- 조정위원이 신청인 대리인 및 피신청인에게 조건 투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확인, 동시에 양보도 있을 수 있다고 회답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최신시설 계획도서 제출을 요청, 피신청인이 다음 조정회의까지 제출을 약속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문가 지질조사의 접수를 요청, 조정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회답을 보류

00. 1.12 : 제5회 조정회의

- 피신청인이 지질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회신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① 사전조사에서 活斷層이 없다는 확인을 얻을 수 있었고, ② 연약지반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
- 피신청인이 시설계획개요서를 제출. 신청인이 시설계획의 문제점 등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석하여 피신청인 보조자(설계업자 등)의 사업개요 설명 청취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① 지질조사 실시에 대하여 재

고 ② 오늘 설명사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을 요청. 사업계획에 관한 질문은 다음 회의에서 정리의사를 제출

00. 2.21 : 제6회 조정회의

- 피신청인이 단층 관련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향은 변함이 없음을 회신(자료는 제출)
-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이 동석한 가운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측 보조자가 신청인 대리인 및 신청인 대표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에 응답
- 조정위원이 신청인측에 대하여 차기 조정회의 7~10일 전까지 앞으로 조정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신청인측이 양해

00. 3.24 : 신청인측에서 진행의견서를 제출

00. 3.30 :

- 오전 : 제3회 조정위원회
 - 조정조항 골자에 대하여 협의
- 제7회 조정회의
 -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측의 진행의견서에 대하여 조업을 전제로 하는 조건에 대하여는 검토를 하지만 조사검토회의 설치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
 - 신청인측이 조정위원에게 협의 중간검사에서 실질적으로 조사검토회의 기능이 실현할 방법의 검토 요망
 - 조정위원이 차기 조정회의에서 조정안 제시 및 수락권고 할 의사를 예고

00. 5.1 : 제4회 조정위원회

- 조정안 및 조정위원장 담화를 결정, 조정안의 공표는 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

00. 5.9 : 제8회 조정회의

- 조정위원이 양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수락하지 않는 경우의 제출기한은 00.6.12로 설정)



해외분쟁조정

- 조정회의 종료후 매스컴에 조정위원장 담화발표
· 조정조항 골자에 대하여 협의

00. 6.12 :

- 신청인측은 신청인 가운데 5명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문서를 지참.
- 기타 신청인에 대하여는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명.
- 피신청인측이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문서 지참

00. 6.13 :

- 신청인 가운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한 5명에 대하여는 조정이 중단된 것으로 보며, 기타 271명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정안

99년(조)제1호 산업폐기물 처분장 건설 중지 청구사건에 대하여 양당사자는 다음 조정조항을 수락하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

00년 5월 9일

야마가타(山形)현 공해심사회
조정 위원장
조정 위원

조정조항

1. 피신청인은 E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이하 처분장이라 한다)의 시설의 설치, 증설 및 개조함에 있어서 처분장 부지내 단층을 따라 파쇄대 등 연약지반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행정청 야마가타(山形)현의 지시에 따라 필요적절한 구

조상의 안전확보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신청인은 관할행정청이 신청인의 의사를 포함하여 지정한 처분장 주변의 수질판측지점(3지점 이내로 한다)에서 매립개시전에 1회, 매립개시후에는 매년1회, 71년 12월 28일 환경청고시 제59호「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에 대하여」의 별표1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또는 94년 3월 13일 환경청 고시 제10호「지하수의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의 측정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이 미리 3명 이내로 지명한 신청인의 대표자(이하 신청인대표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당해 측정결과에 환경기본법(93. 11.19 법률제91호)제 16조에 근거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측정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3. 피신청인은 다이옥신류의 함유량이 「금속등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관련 판정기준을 정하는 총리부령」 제3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1g당 3ng)을 초과하는 분진 및 소각재에 대하여는 발생원인 폐기물소각로의 신형 구형을 막론하고 처분장으로 매립 처분하지 않는다.

4. 피신청인은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분장 및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장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명령」 및 「다이옥신류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명령」을 토대로 처분장 차수시트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장의 지하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며, 동시에 그 결과를 관할행정청 및 신청인 대표에게 통지한다. 또한 파손이 인정된 경우에는 매립처분을 일시 정지하고 관할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5. 피신청인은 처분장에 대하여 매립처분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년간 매립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3월말 까지 신청인 대표에게 통지한다.



6. 피신청인은 처분장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하 “운반차량”이라 한다)의 통행에 의한 주민 피해의 위험이 없도록 운반차량의 차종(최대적재허중), 운행통로, 운행 시간대, 운행대수, 운행 속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차량운행계획 서로 정리하여 도로관리자(F 시장) 및 신청인 대표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도로관리자 또는 신청인 대표자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피신청인은 상기 6의 운행 통로에 대하여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의 파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히 도로관리자(F 시장)에게 신고하고 동시에 도로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피신청인은 사업자 책임에 따라 신청인의 건강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신속히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가해원인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한다. 그러나 떠도는 소문이나 풍문에 의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9. 피신청인은 신청인 대표로부터 처분장의 매립처분 및 유지관리의 상황과 관련한 관계서류의 열람 복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매립처분과 관련한 위탁자의 명칭 및 위탁료의 금액 등 제3자에게 알려지므로써 피신청인 경쟁상의 지위, 재산권 등의 정당한 이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피신청인은 처분장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의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변경을 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승계 혹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매립처분 종료후 시설관리를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신청인 대표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한다.
11. 피신청인은 F 시장으로부터 처분장 및 그 주변의 생활환경 보전과 관련한 협정(이하 「환경보전협정」이라 한다)

의 체결요청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대응한다.

12. 피신청인은 「야마가타(山形) 현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 환경보전협의회」의 부회로서 야마가타(山形) 현, F 시장 및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E 최종처분장 협의회(가칭)」(이하 협의회라고 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협의회에 의한 상기 11의 환경보전협정 및 관계법령 등 준수상황의 확인 및 시설의 감시 및 출입검사(반입폐기물의 발췌검사 포함)를 접수함과 동시에 협의회로부터 지도에 성실하게 대응한다.
13. 피신청인은 신청인 대표와 상기 1~10의 조정조항의 준수상황에 대하여 협의, 확인하는 회합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14. 본건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 유

1. 신청인은 본건 공해분쟁의 화해의 전제로서 처분장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단층 등의 조사를 하고 처분장의 설치나 설계 등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조사검토회」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당 조정위원회로서는 관할 행정청(후생성, 야마가타(山形) 현)에서 「단층이 인정된 경우에도 통상 토목공학적인 대책을 강구하면 처분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견해의 표시를 포함하여 「조사검토회」의 설치를 하지 않는 조정조항을 작성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제7회 조정회의에서 관할행정청인 야마가타(山形) 현이 실시하는 처분장의 중간검사에 신청인이 추천하는 지질학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당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조사결과, 당해 중간검사는 관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하에 실시된 것이며, 참가가 예정된 지질학 및 토목공학 전문가 각 1명은 모두 「야마가타(山



해외분쟁조정

形) 현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심사회」의 위원인 것이 판명됐다. 때문에 당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가가 없어도 적정한 검사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예정대로 중간검사 실시를 전제로 조정조항의 1을 제시하였다.

2. 신청인은 처분장의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피신청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환경기준에 관한 수질 등의 측정 검사 실시 등 9개 항목에 걸친 조정조항의 제시를 당조정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당 조정위원회에서는 각 항목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의한 규제나 검사 외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객관적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본 조정조항의 2에서 8까지 제시하였다.

3. 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처분장 주변의 주민 권리로써 처분장시설에 들어가는 것 등 4개 항목에 걸친 조정조항의 제시 등을 당 조정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당 조정위원회는 각 항목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의한 규제나 검사 등 외에 신청인이 이를 요청하는 객관적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본 조정조항의 9 및 10에 제시하였다.

4. 신청인은 당사자가 추천하는 안전조업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가진 「환경보전심사회」의 설치를 조정조항으로서 제시하도록 당 조정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당 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 및 야마가타(山形)현 및 f 시의 견해를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11에서 13 까지 제시하였다.

5. 당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이 본조정안을 수락하고 야마가타(山形)현 및 f 시의 협력과 더불어 처분장의 조업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의 조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조정위원회 장

99년(조)제1호 사건(산업폐기물 처분장 건설중지 청구사건)에 대하여 당 조정위원회는 오늘,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분쟁조정사건은 99년 3월에 조정신청이 있었으며, 오늘까지 당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회의를 8회 개최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청취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절차를 다하여 당사자 쌍방의 양보에 의한 합의성립을 도모하여 왔다.

당 조정위원회에서는 산업폐기물처분장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당사자 쌍방이 오늘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고 관계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더불어 산업폐기물 처분장의 조업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나가도록 기대하는 바이다.

00.5.9

야마가타(山形)현공해심사회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환경평가사 시험 특강 실시

문의 :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02)852-2291